

의안번호	2205536
의 퇴 인	서명옥의원
회 답 일	2025.02.05.
추계번호	24C5168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5조 (중앙응급의료센터)	○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음(제1항) 3. 응급의료기관 등 간의 업무 조정 및 지원, 관련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- (현행)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 조정 및 지원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5조 (중앙응급의료센터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중앙응급의료센터(안 제25조)

- 개정안은 현행 “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”에 국한되어 있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“응급의료기관 등 간의 업무 조정 및 지원, 관련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”로 확장하려는 것으로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보건복지부에 따르면, 현재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현행법에 명시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외에도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으로부터의 응급의료기관 간 이송과 전원 의뢰 요청에 대응하고 있음([표 1] 참조)

- 또한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자원(병실, 장비 등) 정보와 중증질환 수용가능 정보 제공, 응급의료 모니터링 등 개정안에 따른 ‘관련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’와 관련한 일부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음([표 2] 참조)

[표 1] 최근 3년간 응급환자 전원 요청 건수

(단위: 건수)

연도	2021	2022	2023	2024.8월 말
요청 건수	6,177	6,473	4,053	7,517

주: 전국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의뢰된 응급환자 전원 요청 건수를 의미함

자료: 보건복지부

[표 2] 중앙응급의료센터 업무 현황

구분	세부 내용
응급환자의 이송 및 전원조정 업무	○ 전원 핫라인 관리: 전원 요청 접수, 전원 기관 조정, 선정 및 안내 ○ 응급의료기관 간 이송 환자의 사후 점검 및 관리 ○ 응급의료헬기 등 이송 자원의 지원 ○ 119 이송 중증응급환자(미해결 사례)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선정 업무
재난 및 유사 재난 사건에 대한 의료 대비 및 대응	○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및 대응 관련 관계기관 협조 및 비상연락망 유지 - 소방 종합상황실 및 구급상황관리센터 비상연락망, 응급의료기관 재난 핫라인(유선·무선 전화) 유지 ○ 대비(readiness) - 재난 발생 감시(소방, PS-LTE, 지역별 지원센터, 언론 등) - 재난의료 핫라인 및 무선통신체계 관리(정부, 응급의료기관, 보건소 등) - DMAT 및 보건소 신속대응반 핫라인 및 출동체계 관리 - 재난응급의료 인력 대상 교육·훈련 ○ 대응(response) - 재난 규모별 재난의료 대응 수준 판단 - 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대응 · DMAT 및 보건소 신속대응반 출동 · 인근 응급의료기관 수용가능 병상정보 등 상황 전파 · 타 부처/부서 협조 등
실시간 응급의료정보의 수집, 관리 및 제공	○ 응급의료자원(병실, 장비 등) 정보 및 중증질환 수용가능 정보 ○ 응급협진, 응급영상판독 등 응급의료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중재 ○ 회귀 해독제 구매·비축 및 요청 접수에 따른 지원(24시간)

자료: 보건복지부

- 다만,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개정안에 따른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으며, 개정안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범위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사업 확장 여부 및 그에 따른 운영비 증가 등에 대한 합리적

인 가정이 어려움

- 보건복지부에 따르면, 최근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급환자의 이송 및 전원 조정 업무가 증가하고 있으며, 중앙응급의료센터의 '응급의료기관 간의 업무 조정 및 지원'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경우 관련 인력 충원¹⁾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또한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에 따른 업무 범위가 확장될 수 있으나, 현시점에 그 규모와 기존 사후관리 대체 여부 등을 가정하기 어려움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

1) 보건복지부에 따르면, 개정안의 업무 확대에 따른 인력으로는 상황요원, 이송체계 관리 및 평가 요원, 행정지원인력 등이 충원될 필요가 있음